

- 나. 읍 지역의 농·어촌지역학교 근무경력('09.2.28.이전 도·농복합시의 동 지역에 근무한 경력 포함)은 1월마다 0.012점(1개월 미만은 일 0.0004점)을 가산한다.
- 다. 공단(안산의 반월공단, 시흥의 시화공단)지역 소재학교 근무경력은 공단 경계에서 3km 이내에 위치한 학교에 근무한 경력에 대하여 1월마다 0.009점(1개월 미만은 일 0.0003점)을 가산한다.
(단, '09.02.28.이전의 근무경력은 종전 규정에 따라 아래 표와 같이 구분하여 평정)

기준	대상학교		평정점 부여기준
	안산	시흥	
2km에서 3km이내	양지중, 고잔고, 원일중, 단원중, 석수중, 단원고	군자중, 군자공고, 함현중, 함현고	'09.02.28이전 : 동 지역으로 평정
2km이내	관산중, 별망중, 원곡중, 선일중, 초지중, 안산해양중, 원곡고, 초지고, 양지고	정왕중, 송운중, 서해중, 시흥중, 군서중, 시화중, 월곶중, 군서고, 정왕고, 서해고, 경기스마트고(시화공고)	'09.02.28이전 : 읍·면 지역으로 평정

라. 농·어촌근무경력 가산점 인정기준의 범위

- '95.01.01.부터 '95.12.31.까지는 학교가 소재한 읍·면 지역에 거주하고 본인의 주민등록이 되어 있는 자
- '96.01.01.부터 '97.12.31.까지는 학교가 소재한 읍 이하 지역이나 인접 군지역에 본인의 주민등록이 되어 있는 자(단, 인접지역은 학교가 소재한 지역과 경계선이 맞닿은 경기도 내의 군 지역을 말함)
- '98.01.01.부터는 읍 또는 면 지역에 소재한 학교에 근무한 경력은 주민등록 및 실제 거주 여부와는 관계없이 가산점을 부여함
- 읍·면 지역의 학교 중 도·농복합시로 승격되어 행정구역이 동(洞)지역으로 변경된 학교는 도·농복합시로 승격된 학년도의 2월말까지 농·어촌지역 가산점을 부여함 (2005년도에 행정구역이 개편된 지역부터 적용)

5. 접경지역 근무경력 가산점(1.50점 만점)

- 가. 2004.01.01.경력부터 평정함(1월마다 0.015점씩 가산(1개월 미만은 일 0.0005점))
- 나. 고양시의 덕이고, 대화고, 파주시의 운정고는 2012.03.01.부터 접경지역 가산점을 부여함
- 다. 2013.03.01.자 신규지정교(생연중, 문산중, 문산제일고, 포천고, 동두천여중, 동두천중, 보영여중, 동두천고, 보영여고, 한국문화영상고)는 2013.03.01.경력부터 읍지역 가산점과 동일한 평정점을 부여함
(2013.12.31. 평정 기준으로 1월마다 0.012점씩 가산(1개월 미만은 일 0.0004점))
- 라. 2014.03.01.자 재지정교(동두천중앙고, 동두천외고, 송내중앙중, 신흥중, 신흥고)는 2014.02.28. 까지 기존 접경지역 근무경력 가산점을 부여하고, 2014.03.01.부터는 읍지역 가산점과 동일한 평정점 부여함
- 마. 위 '다'항의 10개교, '라'항의 5개교를 제외한 기존 접경지역 근무 경력 가산점 대상교(기관)는 2014.02.28.까지만 가산점을 부여함.